

[별표]
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항목(제6조 관련)

「화학물질관리법」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다음의 항목에 따라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.

구분	항목	연번	세부항목	점검방법	
1. 사업장 내부 활동	가.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이해도	①	사업주(공장장)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에 대한 이해도	면담	
		②	유해화학물질 취급자, 안전환경담당자, 방재요원 등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에 대한 이해도		
	나. 화학사고 예방 활동의 적절성	①	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자체점검 실시 및 결과 활용	기록검토 및 현장확인	
		②	기본정보, 시설정보 등의 변경사항 기록·보관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반영		
		③	고정식 유해감지시설, 경보시설 등의 점검 및 검·교정 등 유지관리		
		④	안전관리계획 운영 및 사고위험도 감소를 위한 안전성 추가 개선 계획 실행		
	다. 화학사고 대비 활동의 적절성	①	화학사고 대비 교육·훈련 연간 계획 수립, 결과 보고 및 사후 관리		
		②	확산방지설비 및 방재장비·물품의 유효성		
		③	사업장 내·외부 여건 변화에 따른 공공수용체, 환경수용체 등 주변 환경 변화 여부 확인		
		④	운전책임자 및 작업자, 피해 우려 인원 등의 현황 관리		
	라. 화학사고 내부비상대응계획의 작동성	①	대표 공정별 응급조치계획의 작동성		
		②	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조직의 적절성 및 현행화		
		③	사업장 내부 비상대피 계획의 적절성		
		④	화학사고 사후조치 계획의 적절성		
	2. 사업장 외부 활동	마. 화학사고 외부비상대응계획의 실효성	①		비상시 대외소통 계획의 작동성
			②		평상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주민간담회, 협의체 등의 운영(참여) 및 활동
③			지역비상대응기관, 인근 사업장과의 공조체계 운영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		
④			인근 사업장 및 지역주민 보호·대피 계획의 적절성		
⑤			지역사회 고지 등 지역사회 정보 제공의 적극적 이행 및 실시 여부 기록·보관		